의 장 제 도

글 · 한윤근 변리사 두레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의 의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장법 제2조)을 말하는데, 의장권은 이러한 것에 관하여 등록 받은 것을 말함.

의장의 요건

가. 물품성

의장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 생산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방범초소,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은 예외로 함.

(2)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예) 기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

(3) 분상물(粉狀物) 또는 분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예) 시멘트, 설탕 등

(4)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예) 양말의 뒷굽모양

(5)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룬 꽃모양 등

나. 형태성

물품의 형태성이란 물품이 일정한 고정의 형체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의장은 이러한 형태(형상)에 모양,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짐.

다. 시각성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등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의장의 대상이 아님.

라. 審美感(미감성)

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함. 즉, 해당물품으로부터 美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의장의 등록요건

가. 공업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기계에 의한 양산, 수공업적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함.

° 자연물이나 순수미술분야에 속하는 회화, 조각 등은 공업성 결여

나. 신규성

° 신규성은 의장출원시점에서 당해 의장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함.

° 신규성 상실사유

i) 출원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ii) 출원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iii) 위 i), ii)와 유사한 의장

다. 창작성

° 모방이 아닌 독창성이 있는 의장을 말함.

- 주지형상에 의한 용이창작이 아닐 것(TV,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것)
- 단순한 상업적 변화에 의한 용이창작이 아닐 것
- 전용의 상관습에 의한 용이창작이 아닐 것 등

° 널리 알려진 의장으로부터 용이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등록 받을 수 없는 의장(의장법 제6조)

° 국내외의 국기, 국장, 훈장, 공공기관의 표장과 국제기구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유사한 의장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의장의 주요제도

가. 선원주의

°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자에게 등록인정

° 동일(同一) 출원의 경우 : 협의, 그 중 하나의 출원만 등록 가능

나. 1의장 1의장등록출원

° 의장등록출원은 1의장마다 1의장등록출원으로 한다.

° 예외 : 한 벌 물품의 의장(2종 이상의 물품이 관습상 한 벌의 물품으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의장)의 경우에는 1출원으로 가능

예) 찻잔과 접시, 장기알, 트럼프, 신사복(상, 하) 등

다. 다의장 등록출원

° 대상 : 무심사등록의장

° 20이내의 의장을 1의장 등록출원 할 수 있음.(1의장 1출원에 대한 예외)

라. 유사의장

° 자기의 등록의장이나 출원중인 기본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을 말하며, 이러한 의장은 유사의장으로만 등록 받을 수 있음.

° 유사의장으로 등록된 경우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과 합체됨(존속기간, 무효의 효력 등)

마. 비밀의장

° 의장의 공개로 인한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기능)

바. 의장의 공개

° 의장은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타인의 모방이 용이함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등록 후에 공개(등록공고)함이 원칙임.

° 그러나 출원인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원을 조기에 공개함. (조기공개)

-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인정

사. 의장무심사등록제도

° 일부품목의 경우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방식사항만 심사한 후 의장등록허여

° 대상품목: B1류(양복, 한복, 잠옷, 수영복 등), C1류(침구, 커튼, 방석 등), F1류(사무용지, 인쇄물 등), F4류(포장지, 포장용기, 표딱지), M1류(직물지, 판, 끈 등)

° 다의장 1출원가능(20개 의장까지)

※ 실체심사는 의장등록 후 이의신청단계에서 심사

아. 의장등록 이의신청

° 대상 : 무심사등록의장

° 기간 : 공고일로부터 3월내

° 심사사항 : 실체사항

° 이의결정(합의체에 의한 결정)

- 유지결정 또는 취소결정

°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가능

의장권의 효력

가. 실시의 독점

등록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용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는 의장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만이 독점

나. 존속기간

°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 '98. 3. 1 이후의 출원부터 적용

다. 실시권

° 전용실시권 : 등록의장을 독점적으로 실시

° 통상실시권 : 등록의장을 실시

의장권의 침해와 구제

가. 침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상의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회복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형사상의 구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

심판 및 소송

특허·실용신안의 경우와 같음.